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상정된 안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2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2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2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2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2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2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2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2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2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2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2
1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3
1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3
1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3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새마을금고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6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1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1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1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10시08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에 따라서 18개 지방자치단체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고, 개정안은 상기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2조 1의2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방자치분권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전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34조제3항에서 자구 정리가 일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항에서도 역시 자구, ‘이 조에서 같다’를 ‘이 항에서 같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요. 5항에서도 역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6항도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으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정부 측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 산자위에서는 이 법안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산자위에서 법안심사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여당 간사와 이야기를 했고 산자위에서도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

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빨의해 주신 한병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도 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내용에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서의 보조율 비율을 차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결 의견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관심지역으로 지정도 되고 확대가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현재 1조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증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늘리는 부분도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저도 한병도 의원님 지방소멸에 관심 가지고 좋은 법안 내 주셔서 동의하고요. 지금 소멸지역이 89개 지방자치단체인데 관심지역은 지금 예상키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18개로 규정돼 있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5년 단위로 감소지역, 관심지역을 매번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때 계속 아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5년 단위면 다음에는 몇 년도쯤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6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26년에 다시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다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더 혹시……

박정현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차관님께……

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사실 대전이 동구·중구·대덕구가 다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다 위기적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아까 정춘생 위원님께서 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것도 저도 같은 의견이고 기금 사용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운용지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개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인데요.

○**양부남 위원** 제가 먼저 하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위성곤 위원님, 우선 양부남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조금만……

○**양부남 위원**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방분권 보면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감소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A라는 지역이 인구가 몇 명 줄어야지 감소지역으로 봅니까? 한 명만 줄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8개 지표를 사실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도 있고 인구 밀도도 있고요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표가 있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그 지표는 누가 정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일단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중에서 지금 일부만 정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지표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요. 나머지 20% 내에서 또 관심지역으로, 예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금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로 사실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SOC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기금을 사용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복지를 끌어냄으로써 그분들을 유지시키는 방안들이 옳은 방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SOC를 기반으로 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중심보다는 실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해 달라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잠깐 박정현 위원님과 위 위원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멸대응기금이 어쨌든 기금법에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시설사업에 쓰도록 일단 기금에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기금이 2032년, 33년까지 10년 동안만 운영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이라든지 생활여건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말씀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이견 없는 걸로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55조에 있는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징수 실적이 낮은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등 폐지를 통해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8개 부담금 폐지, 14개 감면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담금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담금의 근거를 삭제해서 향후 부과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은 없애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있어도 될 이유가 된다고 보이고요.

이런 제도를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쉬워도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1949년 자치법 제정 시부터 존재해 왔던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 김천, 서울 노원구까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운영 실적은 실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의 예를 한번 보시면요 노원구 상계9단지 아파트 푸른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5.1억 원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5억 원 그리고

노원구에서 2.6억 원을 분담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한 예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차별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개정안이 의결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9페이지에 있는 노원구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담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노원구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보통 민간보조를 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분담금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문제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등에 민간보조를 주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적용을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 외의 금전적인 부담을 시민들,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민자치법보다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 특성상 일부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분담금으로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분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 사례가 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밖에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고 그 곳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파악된 게 정확한가요? 걱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조례로 이걸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일단 제정해야 되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현재 다섯 군데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 실제 운영하는 케이스가 노원구만 하나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담금을 폐지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폐지해도 별, 국민……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십니까?

○**이달희 위원** 예,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의사일정 3항을 같이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폐지를 하시게 되면 소위 자료 6페이지의 부칙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6페이지?

○**소위원장 윤건영** 소위 자료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항까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정훈 위원장님 대표발의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읍의 설치 기준이 원칙적으로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과 동일하고요. 예외에 있어서 인구 미만인 경우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그리고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이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가 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지역통합력 회복 및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 설치에 따라 동으로 전환된 지역의 읍 환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특례 적용 및 공통된 지역의식을 가진 주민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의 통합 및 시의 설치로 인해 읍이 동으로 된 경우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동을 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읍으로의 전환을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는 읍·면 지역에 인정되는 특례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읍 및 영산포읍의 행정구역 개편 연혁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개정안은 저도 인구 감소 시대에 여러 가지 행정체계를 미리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이 개정안의 내용들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농복합시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동이 통합되어야 되고 또 시 설치 이전의 읍이라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전제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 이런 인구 감소 등에 따라서 동에서 읍으로 전환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80여 개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 동에서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에 있는 읍면동별로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좀 전체적으로 조문이 개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십사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말에 저희가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올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바로 전국 단위의 읍면동 전체 분석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빠르면 아마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기준, 동에서 읍으로 바꾸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법안 발의하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나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발의하신 내용 중에도 제안사항에서도 아마 나주시 사례를 제안 주셨었는데요. 나주시 사례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금성시라고 하는 도시가 됐다가 다시 도농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단계로 복원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현재 있고 또 시설물 관리에도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데 동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나주시 내에 있는 동을 읍으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페이지? 연혁은 봐서 알겠는데,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서 금성시가 되었다, 금성시가 다시 나주시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리고 다시 95년도에 도농복합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나주시하고 나주군하고 합쳐서 나주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서 동이 만들어진 거고.....

○**이달희 위원** 동 2개를 합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그래서 동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실제는 농촌지역에 가

까운 읍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발의하신 법안인데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차관님의 아까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300개 해야 된다는 것도 취지는 필요하고 또 이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하니까 이 나주라든지 몇 개를 시범 케이스로 해 보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행안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어쨌든 나주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자치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반,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개별 케이스를 자치법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를 언급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가 본 태백시 같으면 인구가 3만 5000입니다, 태백시인데도 동이 8개 있는데요 사실은 인구로 보면 동 단위가 몇 천 명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다 어떻게 이 법안에 녹여서 해결할지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있다는 것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정부 측에서 최대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좀 정리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더 늦추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발표 시에 그 내용까지도 좀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법안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고 하니까……

다만 제가 하나 좀 그것 하는 건 전국에 3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건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소위 내에서 일종의 부대의견 성격으로 그냥 공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이달희 위원** 또 위원장이 내신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미래위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동에서 읍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냐면 사실은 읍과 동과의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면 차관님, 내년 상반기까지 이 법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서두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입니다.

22년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및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가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은 과방위 소관인데요. 23년 7월 4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대국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3년 11월 17~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 불량이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에 장애가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24년 1월에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부문 제도개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음영되어 있는 1번의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부터 6번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이 등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유 또는 이용하는'으로 확대를 하고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전산실, 데이터센터 등이 위치한 건축물과 건축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자원의 개념에 포함되어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것과 민간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장애 발생 등 예방 취지가 되겠고요.

수정의견은 정보자원의 정의 변경에 따라서 54조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2조(정의)의 11호를 보시면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고 해서 마와 바의 경우에는 이용 부분이 빠져 있게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이 마와 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서는 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부분인데요. 이것은 자구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망 먹통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민생에 큰 불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24 서비스가 이용이 중지되는 건 물론 지방세 납부까지 늦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망 이상 발생 시에 단순히 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했는데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의도적으로 가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개선이나 지도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공행정망을 관리감독하고 사후에라도 점검을 해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하고 대응계획 세우고, 특히 장애 발생 시에 복구, 사후관리 이런 쪽에 좀 통합체계를 갖추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이 취지고요. 그래서民間의 경우에는 방송통신 기본법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도 좀 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님 것은 아직 안 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같이 하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케이.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조 제목이 현행은 ‘예방·대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예방·대응 및 복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지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 후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장관이 각 기관이 보유·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 자료요청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구체적·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수정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장애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있는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재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해서 하위 법령의 종류를 이에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자주 나오는 정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행정기관 등’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고요.

2호입니다.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4호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선관위사무처 또 행안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56조의2를 보시면 배준영 의원님 안에서 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해서 헌법기관별로 독립적인 장애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수립 지침 통보하게 되고 2항에서는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고요. 3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5항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것을 국회규칙 등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4항의 부분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안 바꾸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행안부장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국회나 법원 등 사무처리 기관별로 장애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이게 중앙사무관장기관별로 하면 예컨대 중복 투자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법안 발의하실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법안 발의했을 때는 투자라기보다는 사실 시스템들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으로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기관별로 각기 다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입니다.

행안부장관이 등급 산정 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이 기준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검토·변경·확정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역시 헌법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4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사무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등급 관리 관련된 법안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수정의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 부분입니다.

행안부장관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황조사 및 점검인데요.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안부장관에게 조치 계획과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해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 취지가 되겠고요.

합동조사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법안 내용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행정기관 등에는 헌법기관이 포함이 돼서요.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제외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등’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56조의3(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배준영 의원님 안에 보면 1항에 ‘행정기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현황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헌법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항의 단서조항 ‘방송통신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과 2항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민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의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은 장애상황 관리 그리고 장애 사후관리, 자료 열람 및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고요.

양부남 의원님 안에는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상황 관리는 두 개정안을 종합하고 장애 사후관리는 배준영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일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장애상황 통합관계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이 시스템을 보다 포괄하고 또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여서 그걸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이 1항과 7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7항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하였고요.

헌법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하도록 또 수정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열람 및 제출 요청과 관련해서는 장애 사후관리를 위한 경우를 기초로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56조의4(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이 양부남 의원님 안이고요. 배준영 의원님 안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는

‘행안부장관’ 부분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고쳤고요.

2항에서 보시면 양부남 의원님 안을 받아들여서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3항은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사무기관의 장’으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의 수정의견 5항을 보시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6항 부분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7항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한 것을 양부남 의원님 안처럼 국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위임 규정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부남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양부남 위원** 감사드립니다.

현법기관을 고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7페이지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부분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설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 활용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정의견인데요.

장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위탁업무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의 근거를 둘 때는 좀 명확한 것이 좋다고 보여서 ‘점검 등’ 또는 ‘복구 등’, 3의2와 3의3의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29페이지, 3의3을 신설해서 장애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도 역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31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느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하위 법령의 정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가 일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기관 측에서 세 분 배석을 요청하셨는데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오찬 전까지 새마을금고법을 죽 가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이 많이 빨리해 주셔 가지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 한번 가 보고 시간이 남으면 여순법까지 가고 안 되면 이거라도 충실히 하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선거제도 정비에 관련된 게 일곱 꼭지고요.

그다음에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에 관한 게 세 꼭지 그다음에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라의 건전성 강화 및 회계제도 개선, 마의 상급기관 감독권 강화 및 회원 권리 보호 그다음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있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2024년 6월 기준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제도 정비에 관한 동시이사장선거일 위탁선거법과 불일치를 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일을 개정, 3월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된 바 있어서 이를 새마을금고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위탁선거법상의 상호금융기관 동시조합장·이사장 선거일 규정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임원은 각종 근무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선거일이 일주일 앞당겨지면 출마준비자가 일주일 차이로 요건을 불충족하여 출마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8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3조를 보시면 3항에 2025년 3월 12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5년 3월 5일로 일주일 앞당기는 것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3월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탁선거법과 선거일을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규정해서 출마준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신뢰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께서 섬세하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페이지에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나이는 현행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개정안 역시 같고요. 회원 가입기간이 현행은 6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개월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자 규모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님 안은 출자좌수가 정관 규정 좌수에 미만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성권 의원님 안은 출자액이 행안부장관 고시액 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이미 선거 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벌칙이 있어서 부정행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보다 제한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페이지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9조 5항 부분에 이 제한이 나와 있는데요. 미성년인 회원은 현행은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2호가 12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호가 윤건영 의원님 안은 출자좌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이성권 의원님 안은 출자액을 행안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선택을,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일정 출자 규모 미만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 통일성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깨끗한 선거를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빌의해 주신 안에도 감사드립니다만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이성권 의원님 안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게 다 6개월이 맥스인데 새마을금고만 12개월로 하는 게 어쩔 는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걱정되고.

그다음에 출자좌수 부분, 저는 투표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출자좌수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으로 정할 것인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일성이거나 아마도 새마을금고의 규모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는 사실 행안부장관이 이것을 다 분류해 가지고서 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획일적으로 통상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런 게 반영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출자금액 관련해서는 농협이 10만 원, 수협이 20만 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에 좀 고민은 있어서 대안으로 우선 행안부장관이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대안도 아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금 고시로 한 게 30만 원인가요?

○조승환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 다릅니다.

○양부남 위원 새마을금고는 얼마로 할 계획입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재 수협이 2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농협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새마을금고는 20만 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20만 원이면 너무 고액 아닌가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새마을금고에 출자하신 분들이…… 한 구좌 20만 원 이상 출자를 못 한 분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지금 그런 취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 법안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이 향후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고시를 하면 20만 원 미만으로 금고에 출자하신 분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말씀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은 너무 고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도시에서 2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마을금고라는 취지가 영세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고를 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고인데 2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고액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질문……

○**소위원장 윤건영**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양부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선거권 제한규정, 의결권 제한규정이 지금 신협은 3개월 미만인데 새마을금고를 12개월 미만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동안 선거 추세를 보면 6개월 전쯤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회원들의 가입이 늘었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협도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협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신협은 전국 선거를 아직 하지 않고요. 새마을금고를 이렇게 손을 보는 이유는 내년 3월에 전국 선거가 되면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불이 붙을까 봐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한 석 달 남겨놓고 조합원을 확 모아 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반복되면 안 된다 싶어서 이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시니까 충분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신협은 전부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요. 금고는 전부 다 간선제로 대의원제로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이. 그래서 이번에 직선제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위성곤 위원** 전부 직선제로 통과가 됐는데, 직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개월로 하게 되면 실제 유력

주자들을 사전에 봉쇄하는 조항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협은 3개월로 하고, 농·수협은 6개월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6개월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수협은 6개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개월 안은 지금 현재 조합장을 하고 있는, 이사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협에 대해서 3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일정 정도의 상한을 막는 정도 수준 안에서 정관으로 결정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는 금고를 만든 일부 기득권들이 평생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사금고화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반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자금을 10만 원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고 회원이기는 한데요, 뭐 금고 회원 아닌 분이 없겠지만. 대의원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장이랑 가깝지 않으면 대의원으로 뽑아 주지를 않아요. 사실상 통보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하는 말씀이어서 저는 그 조항은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새마을금고가 법 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그냥 보류시켜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항은 일단 보류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페이지입니다.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 등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안은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 중 대의원회 선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안은 총회 선출 방식의 당선자 결정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고 최다득표제하에서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네 번째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이사장 외 임원을 이사장과 같은 날 선출하는 경우 이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의원회 선출 폐지입니다. 현행법상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의무적으로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금고, 즉 직장금고 및 총자산 2000억 원 미만 지역금고는 회원 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자에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회원 투표나 총회 선출로만 선출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되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

다. 소규모 금고까지 회원 투표나 총회 선출을 의무화하게 되면 금고 운영비용이 가중될 수 있고, 일부 직장금고는 회원이 전국 사업장에 분산 근무해서 회원 투표나 총회 선출 비용이 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회 선출의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사장 당선자 결정기준은 회원 투표는 최다득표제, 총회 선출 및 대의원회 선출은 과반수득표제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회 선출 시 당선자 결정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총회 선출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등 보다 대표성이 높은 절차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의원회 선출보다는 회원 투표와 유사하며 이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최다득표제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다득표제 선출 시 과반수득표제 선출 시보다 이사장의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 신협은 과반수득표제를 선택 중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그리고 국회법도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이사장 외 임원 선출 방식의 특례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되게 되면 목차 9에서 이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만약 삭제가 된다고 하면 조문 간소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내용이 조문대비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4건에 대해 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원회 선출 폐지 관련해서는 앞서 전문위원 얘기처럼 소규모 금고 또 직장금고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선출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총회 선출의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 세 번째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로 하는 경우, 네 번째 조문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먼저 드릴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조승환 위원** 일단 이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데에서 굳이 대의원만 꼭 뺄 필요는 있겠는가,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물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다음, 최다득표자하고 연장자 선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위원 위원 저는 기본적 원칙으로 회원 투표로 선출해야 된다는 게 기본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식 의원님 안처럼 대의원제는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금고 이사장의 연임으로 선고됐던 모든 비리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20년 넘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임이사장을 하시다가 자산 2000억이 넘으면 다시 바지 이사장을 내세워서 이사장을 하게 하고 금고는 비상임이사장제로 제도를 전환하고 본인은 상임이사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구조가 실제 가능한 게 전부 다 대의원 체계 운영 때문이거든요.

물론 작은 신협에서도 그런 경우들은, 직접 선출하는 신협이라든가 농협에서도 그런 예는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태생한 제도가 대의원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의원제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규모가 2000억 이상 이사장 회원 투표를 하는데, 저는 제가 발의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 투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당에서 정당 대통령후보 선출도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고, 실제 양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주주총회도 온라인 투표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표인 경우는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한다면 훨씬 더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주민투표도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투표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사실은 비용 때문이거든요.

제주 예로 들었을 때 온라인 투표로 하면 한 2억 원 정도면 되는데 전체 투표하면 한 4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2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국 동시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 제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총자산 200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 회원 투표와 그다음에 총회 선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 대의원 선출 방식은 어땠었고 그 자격요건은 어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시지요.

○정춘생 위원 예.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재는 선택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 회원 투표로 하는 테가 과반수 이상이 회원 투표고 나머지는……

○정춘생 위원 기준에 대의원 투표 관련해서, 대의원 선출 방식……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지역별로 해서 뽑습니다.

○정춘생 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아까 대의원 자격요건 있었잖아요, 회원이어야 되고요.

○정춘생 위원 예.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회원 중에서 회원들끼리 지역별로 뽑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실제로 회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실제로?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예.

○정춘생 위원 실제 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실제 그렇게, 일부 농어촌 같은 테에는 사실은 대의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회원들에 의해서 뽑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은 곳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명하고……

○정춘생 위원 지명하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합니다. 대의원 하는 데 출자자금 제한이 있고요, 보통. 제가 회원으로 있는 곳은 5만 원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중에 선택을 하게 하고 그중에 자기 측근을 중심으로 대의원을 만들어서 뽑지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A 권역, B 권역 나눠서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는데 실제 거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만 뽑는 실정입니다.

회원들과 금고랑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지요. 소통이 잘되면 회원 참여가 늘어나니까 그것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정보를 차단하고 그렇게 된다고 들 불만들이십니다, 가 보면.

○박정현 위원 저 질문이……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정현 위원……

○양부남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출 방식이 회원투표제를 시행한 게 몇 %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내년 3월에 곧 처음 시행이 되는데요.

○양부남 위원 아니, 현재는 회원 투표로 한 데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로 총회라든지 대의원 투표를 많이 하셨고 직접투표는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양부남 위원 전 회원을 상대로 이사장을 선출한 사례는 없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거의 총회를 열어서 하지.

○이달희 위원 총회에서만 하지요.

○양부남 위원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가장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 회원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 회원을 상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비용 문제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비용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0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작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원투표제가 개정 전에 있었나요, 제도에? 없었지요, 새마을금고는?

○**소위원장 윤건영**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있는데 선택을 안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도 자체는 있었고 실행 자체가 많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가 1284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의 부분 말씀들이 있는데 2000억 원 미만 지역 금고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소위원장 윤건영** 국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 실무적인 것은 국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2000억 원 이상이 450개 정도 되니까요, 나머지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박정현 위원** 2000억 원 이상이 사백……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450개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450개밖에 안 돼요? 1284개 중에?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금액의 문제가 소요비용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2000억 이상의 금고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금고 회원들의 선택권 자체를 지금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네 가지인데요.

1항, 대의원회 선출 폐지만 보류. 나머지 2·3·4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의원회 선출 폐지 이 부분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용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회원 투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총회도 오시는 분들이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1항만 보류고 나머지 2·3·4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의원선거운동 시 제한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임원선거 선거운동 시 제한행위를 대의원선거에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제한행위, 위반 시 별칙 등이 개정안은 현행과 같고요. 적용대상에 있어서 ‘임원 선거’를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로 개정안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임원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직위 제공 또는 수령, 법정 금지기간 중 호별방문, 모임주최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의원선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합니다. 대의원선거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하는 등 일반 회원 대비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대의원선거운동에 대하여 임원선거와 동일하게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22조제3항상 선거운동 방법 규정 또한 대의원선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협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대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 제목을 ‘임원 등’으로 하고 2항 ‘임원 또는 대의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는 부칙에 제4조(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직선제가 의무화가 되었고 또 내부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대의원들을 사실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면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관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임원선거운동 제한행위를 대의원선거 할 때, 지금 뭐 대의원 선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대의원선거 할 때 적용하지 말자라는 의견이라면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다 인정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아마 현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을 실제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지방에서 대의원을 하실 분이 없는데 호별방문들을 뚫어 버리면, 집에 가서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대의원이라는 게, 대의원제가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의원의 역할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선출직의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농촌의 경우는 대의원들을 요청을 하게 되지요. 하게 되면 그것을 선거법 불법으로 보게

되나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임원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엄격하게 보면 아마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대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 출마자에 대한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문제, 다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과장님아십니까?

마이크 그냥 켜시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것 쓰십시오.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제한을 많이 가하게 되면 대의원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했다가 이런 규정에 걸려서 자기가 면칙을 받을지 모르니까 출마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충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의원 어떻게 선출하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대의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출하느냐면 A라는 동 정해서 그 동의 조합원들 모여서 '대의원 선출해 주십시오' 하면, '어디서 할 거냐' 하면 보통 금고 사무실을 정해 놉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나온 사람들 중에 3명이 됐다 하면, 3명이 나오면 3명이 대부분이다 대의원이 되고요. 1명이 나오면 1명이 되고요. 아무도 안 나오면 추후에 금고의 정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대의원을 임명하게 되는 제도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의원을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서 경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경쟁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항이 있어도 별문제가 없고 없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승환 위원** 저희 동네는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대의원 하겠다고 막 전화도 오고.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조항이.

○**이성권 위원**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 보면 대의원제를 없앨 거나 말 거냐의 문제하고 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과열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성곤 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이성권 위원** 예,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본 겁니다.

○**한병도 위원** 우리도 시내권에서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이성권 위원** 시골하고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보류를 시킬까요 아니면 여기서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할까요?

○**이달희 위원** 보류하시지요. 대의원 선출하고 연동이 되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양부남 위원** 지금 어떤 위원분들은 대의원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내시고 어쩔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이건 금고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금고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금고의 규모에 따라서 좀 연동…… 유연하게 우리가 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고의 규모에 따라서.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그 의견까지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 삭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임원 설치 시 자체 의무 설치 기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합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을 설치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25년 3월 임원 선거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공명선거감시단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선거의 경우에는 의무 위탁이 되므로 공명선거감시단을 폐지하는 것이 비용상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임원 선거의 경우에 이사장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또 선거관리 강화 필요성이 사후적으로 발생하여도 현행법에 따라 선거관리 전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8페이지 여섯 번째, 직장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 즉 직장금고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직장금고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장금고는 통상 직장 내 특정 직무 담당자 또는 고위직 중 1명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선거도 1인 출마로 치르고 있음에도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금고를 선관위 의무위탁 조항에서 제외하면 이를 임의위탁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동 조항을 중앙회에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의 자구도 연동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23조의2에 보시면 1항은 ‘위탁하여야 한다’로 의무 조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금고에 한해서 의무 위탁하도록 하고. 2항을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금고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로 구분하여서 각호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직장금고 관련 선관위 위탁을 임의 규정으로 두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2페이지, 불법 선거 자수자 특례 대상 축소 등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1호부터 5호까지 현행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분이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3호 1~2 부분을 수령·승낙한 부분에 한해서 필요적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년 3월부터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 이사장의 회원투표를 통한 선출이 의무화되면 부정행위가 증가할 수 있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 대상을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그러면 회원 또는 가족에게 그것을 수령·승낙만 처벌하고 요구·알선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요?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수령·승낙만 처벌하고 돈 달라고 요구하고 알선한 건 처벌 안 한다는 취지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 경우에 자수한 경우에 감면하겠다는……

○**양부남 위원** 자수할 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자수할 때.

○**양부남 위원** 그러면 요구·알선은 자수해도 감면이 안 된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규정상은 수령한 경우에 자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감면하는 조항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양부남 위원** 요구·알선했을 경우에는 자수 감면의 혜택이 안 된다는 취지인가요?

○**조승환 위원** 요구한 사람은 자수 안 할 것 같은데……

○**양부남 위원** 아니, 요구했다가 자수한 경우는……

○**김성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 경우는 요구하고 자수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 그러니까 상대방에 범죄를 씌울 목적으로 요구를 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자수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양부남 위원** 질이 안 좋다?

○**김성희 위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걸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받았습니다’ 자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그것 좀 주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쪽이 반응하면 가서 자수를 하면 이 사람은 빠져 나가고 이제 저쪽이 처벌받게 되는……

○**양부남 위원** 알선을 내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을 알선했다, 돈을 주고받았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수한다.

알선했을 경우에 자수를 감면을 줘야지만 범죄 사실이 더 쉽게 드러나지 않는가요? 내가 입후보자 A와 거기 회원 간에 돈을 주고받도록 알선했어, 그것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야지만, 자수자에게 감면을 줘야지만 정보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조승환 위원** 브로커가 양성이 될 것 같은데.

○**양부남 위원** 브로커 양성?

○**위성곤 위원** 알선자는……

○**양부남 위원** 후보자와 유권자를 알선을 했어, 후보자로 하여금 유권자에게 돈 주도록.

○**위성곤 위원** 후보자와 후보자가 알선을 하거나 후보자가 선거권자를 알선을 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양부남 위원** 그 사람이 자수를 해요.

○**위성곤 위원** 자수를 하면……

○**양부남 위원** 정보가 나오지. 그런데 자수 감면을 안 줘.

○**위성곤 위원** 감면 안 해 주면 자수할 이유가 없지요.

○**양부남 위원** 자수 안 하지요. 자수 안 하면 정보가 안 나오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시면……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거는 빼고 김성희 위원님처럼 알선은 넣고 그래서 수령·승낙·알선.

○**양부남 위원** 제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현행에도 알선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좀 보류시켜 볼까요, 이것도?

○**양부남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 이러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더 추가 설명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게 일단 위원님들께서 농협·수협·산림조합하고의 어떤 유사입법례하고 비교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만 알선을 넣게 되면 조금 그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협·수협·산림조합법도 바꾸면 되지요.

○**양부남 위원** 그것도 바꿔야겠네, 그것 법이 잘못됐네.

○**이달희 위원** 똑같게 리딩을 하면 되지. 이것 개정하고 그 개정안 내서 하시지요, 알선.

○**위성곤 위원** 알선은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량은 알선자는.

○**소위원장 윤건영** 수령·승낙·알선, 이 ‘알선’이라는 말을 집어 넣자라는 게 양부남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이거를 빼자라는…… 이거는 빼고.

○**조승환 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자도 그렇게 해서……

○**양부남 위원** 알선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지요.

○**조승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코를 펼 가능성도 있지, 자기는 감면받고.

○**양부남 위원** 그런데 자수자 중에는 코를 끼는 것보다도 순수한 의미에서 자수할 수도 있지요.

○**이성권 위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양부남 위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데……

○**이성권 위원** 그게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위성곤 위원** 사실 요구자나 알선자나 범죄를 행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고의적이지 않으면 알선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에게 죄를……

그거는 나중에 하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쟁점은 아니고요. 추가하는 거니까……

○**양부남 위원** 형법의 일반론에 있어서도 자수 감면을 혜택을 주면서 어떤 행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수했을 때 다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형법 일반론에 비춰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나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5페이지입니다.

큰 틀의 두 번째 나가 되겠습니다.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8번,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 적용기준 강화입니다.

금고 총회 개의 요건을 보시면 표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이 되겠는데요. 개정안도 동일합니다.

이 특례에 있어서 300명 초과 금고는 151명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서 500명 초과 금고는 251명 출석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금고의 총회 개의 요건은 과반수 출석이나 회원 300명 초과 금고는 소액 거래 회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총 회원수에 관계없이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특례의 적용 기준을 회원 500명 초과 금고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특례가 1998년에 도입되었는데 이후 금고당 회원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에 부합하도록 특례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대규모 금고에 대해 총회 개의 특례 외에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전자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 보다 강한 특례인 후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13조를 보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151명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251명, 실제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실제 우리 통계를 보면 회원 수가 평균 6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앞쪽 개의 요건을 보면 과반수가 됐습니다만 3000명……

○**위성곤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5000명, 6000명 되는 곳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500명 회원인데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금고나 신협인 경우는 그러면 총회 개의를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 반수 출석해야 되니까. 투표 행위도, 투표를 해도 전체 500명 중에 251명이 그 회의장에 와야 개의가 되고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 너무 많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보완을 위해서 그다음 조항에 사실 두고 있는 게 대의원제입니다. 그분들이 전체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대의원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16조 조항이 보완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

○**소위원장 윤건영** 38페이지, 16조.

○**이성권 위원** 이렇게 되면 총회가 아니고 대의원제로 다시 돌아가는 양상이 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위성곤 위원** 결국 대의원제로 다 갈음이 되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어떻게 보면 대의원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0페이지입니다. 9번, 총회 의결 사항 일부를 회원투표로 갈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총회 의결사항은 1호 정관의 변경부터 8호 그 밖의 중요한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호에 있는 해산, 합병 그리고 3호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회원투표로 갈을 수 있는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고 의결사항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의결사항을 회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표에 보시면 임원 해임의 경우에 농협의 경우 가능하도록 법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농협의 경우에도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으로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개정안에 있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서 해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앞서 제가 얘기한 총회의 개의와 관련된 사안의 임원 부분 선출이 총회가 잘 성립이 안 될 경우에 회원투표를 하게 되면 가능하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이것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임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해임 조항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선임은 가능한데 해임만.

○**이성권 위원** 농협은 해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엄격하게 한다고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오게 되면 과반수로 아마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신협 등에서는 일단 임원 선임까지만 회원투표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둘 중의 한 개겠네요. 다른 기관하고 연동을 시키면 선임까지만 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넣는다 하면 엄격하게 농협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처럼 3분의 2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제도적 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해임을 3분의 2로 하면 거의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위성곤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당하지 않은 거지요. 임원의 해임인데 임원은 누가 임명하냐면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이사장이 투표를 소집하는 소집권자인데, 그렇잖아요. 소집권자인데 자기가 임명한 임원을 해임하는 데……

○**정춘생 위원** 회원의 3분의 2는 너무……

○**위성곤 위원** 이사를 직접 선출하게 돼 있나요, 지금? 제가 잘 안 읽어 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총회에서……

○**위성곤 위원** 총회에서 전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로구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할까요?

○**위성곤 위원** 이것도 보류하지요, 어려우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겠습니다.

의견 확인부터 죽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어.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3페이지입니다.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신규로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집요구권은 이사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협·신협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회, 국회 임시회 등 주요 회의체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안제안권은 최종 의사결정이 아닌 의안의 단순 제안 행위는 회의체 구성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권리로 보입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48페이지부터는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조직 개편 요약 부분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기구를 보시면 총회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네 번째로 금고감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의 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나머지 임원들에게 분산시키고 특히 임원 중 전무이사·지도이사를 통합한 경영대표이사의 직위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금고감독위원회의 구조와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회 회장의 권한 제한·분산 검토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표에 보시면 대외업무 권한은 동일하고요. 중앙회 대표권·업무총괄권은 각 상임임원에게 이관됐고 직원 임면 및 승진·전보·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승진·전보·인사교류는 각 상임임원에게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성과평가는 이사회 소속 성과평가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장 임기의 경우에 현행은 연임 1회가 가능하고 중임은 무한 가능한 데 반해서 개정안에 따르면 연임·중임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회 대표권·업무총괄권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상임임원은 선임 시 회장보다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전문성은 높다는 장점과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어 대표성은 제한된다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만 23년 회장이 중앙회 자산운영·대출제공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회장 권한 제한 논의가 활성화된 점,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미 회장이 대외협력 권한만 수행하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도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중앙회 대표권·업무총괄권이 이미 이관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승진·전보·인사교류 권한 이관입니다.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미 회장이 직원 임면 권한만 수행하고 승진·전보·인사교류는 해당 직원의 소속 임원이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원 성과평가 권한 이관 부분은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로 권한을 이관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 및 임원의 업무상 독립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회장 중임 제한입니다. 먼저 특정인의 권한 독점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의 조직 이해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상호금융기관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4페이지의 부칙 관련된 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부분을 개정규정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회장 이 부분이요?

○**위성곤 위원** 예, 왜냐하면 오늘 처음 들어서 고민이 잘 안 돼서.....

○**이달희 위원** 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류로 가겠습니다. 49페이지 중앙회 회장의 권한 제한·분산 검토는 보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7페이지, 경영대표이사 직위 신설 부분입니다.

기존 지도이사·전무이사의 직무를 통합하는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회장의 주요 권한을 이관받는 상임임원 직위를 통합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모두 일반사업 및 기관운영을 임원 1명이 수행하고 있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비해서 신용·공제 외 일반사업 비중이 낮은 점,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경영대표이사의 업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니까 경영대표이사 한 분으로 다시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이사나 전무이사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회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성권 의원님 안은 이사를 좀 줄이자는 건데 정부 측 의견은 줄였을 경우에 업무가 많다,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농·수·축협 같은 데의 지도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지도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중앙회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옆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뒤의 금고에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황길현입니다.

금고 지도이사는 전국 1284개 금고에 대한 신용사업하고 그 밖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업무, 금고가 문제 있을 때 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해서 구조조정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조승환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교육사업 빼놓고는 신용·공제대표이사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따로 있잖아.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신용·공제대표이사님은 중앙회 총자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 자산운용 업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 그러니까 신용이 아니고 공제 업무를 주로……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분과 중앙회를 관리하는 분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고……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중앙회가 덩어리가 커서 이걸 합치면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전무이사님이 지금 설명 주신 거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맞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신용공제이사는 완전히 다른 별건의 영역이고요, 자산을 운용하는 분이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 **위성곤 위원** 저 잠깐만, 경영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금고 입장에서?

○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반대 의견 냈어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중앙회 입장에서는, 중앙회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고 지도사업하고 중앙회 자산을 총 운용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두 사업을 각각 임원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IT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무이사나 관리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체계는 금고 관리는 지도이사가 담당하고 있고 자산운용은 신용공제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 업무는 전무이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현재 그런 체계가 합당하다고 본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금고중앙회 의견을 수용했고 하니까……

○ **조승환 위원**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얘기를 들어 보지요.

○ **소위원장 윤건영** 그럴까요? 일단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다만 의견은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확인하고 이성권 위원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및 구성 개편 검토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소속이 중앙회고 개정안은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5명 그다음에 전문경력자 3명 이상이 현행이고요. 중앙회 이사 5명, 전문이사 4명 이상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현행은 전체 감사위원 중에 호선하고 개정안은 전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속 이관 및 감사위원 이사 겸임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 소속으로 이관되면 업무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집행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하면 감사 업무의 객관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직속으로 두고 감사위원도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현행법은 감사위원회를 17년 12월 26일 이사회 소속에서 중앙회 직속으로 이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수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도 과반수가 외부전문가이고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중에 호선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직 이해도가 높은 내부인사도 일정 비율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어쨌든 당초 감사회가 회장을 견제하는 기능인데요. 그 독립성은 아마 저하된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2017년도에 이사회에 있다가 별도로 독립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때 현행 체제가 더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저도 감사 업무의 객관성이 저하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 건도, 이성권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요. 반대의견 확인한 걸로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6페이지입니다. 이사회 및 임원 구성 개편 검토입니다.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인 이사의 임기 4년 중 2년 차에 이사회 재신임을 받도록 하며 여성 임원 선출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 수를 11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은 총원을 19명으로 감원하며 외부전문가 수를 10명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외부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면서도 금고이사장 이사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총원을 26명으로 증원하며 외부전문가 수를 12명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 내 전문성과 대표성 간 균형 그리고 금고 경영 여건상 적정 이사 규모,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전문이사 임기 내 재신임 제도 신설입니다.

현행 전문이사 임기는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4년입니다.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개정 내용과 연동해서 전문이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2년 차에 이사회 재신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 여부와 연동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68페이지의 여성 임원 선출 노력 의무 신설입니다.

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 등에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 이사 1명 이상 선출 의무를 부과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회 요청사항 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성권 의원 개정안에서는 금고이사장 이사를 13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3명은 지역본부가 13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13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지역 대표성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전문가에 있는 전문이사를 9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9명을 두게 된 이유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권이 이사회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부전문가 아홉 분들이 3분의 1을 해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아홉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의 요청은 어쨌든 지역의 대표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외부전문가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67쪽에 있는 전문이사 임기 내 재임 제도, 2년 후에 중간평가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여성 임원 선출 노력 의무화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법 거의 제정법을 내셔 가지고……

○**이성권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손을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크게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여기에 지금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 빼고, 이 부분만 보류로 달아 놓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정춘생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여성 임원 선출 노력 의무 신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차라리 이왕 하는 것 의무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 아니면 선출하도록 한다, 선출하여야 한다 그래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소위원장 윤건영** 국장님의 답변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여성 임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어서,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농·수협, 다른 데서는 노력 의무 정도만 부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만 보류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합의가 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되신 거지요, 정확하게?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 나와 있는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는 걸로.

○**이달희 위원** ‘노력’ 자를 빼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의무로 가게 되면 이게 강제 조항이 돼 버려 가지고……

○**이달희 위원** 1명인데, 여기 21명의 5분의 1도 아니고.

○**소위원장 윤건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달희 위원** 5분의 1도 아니고 1명을…… ‘노력’은 빼야 되고, 5분의 1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5분의 1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정춘생 위원**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달희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 현장에 가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수석께서 제안을 주신 건데 68페이지 하단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한번 봐 주시면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1명 이상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의 제안, 절충안으로 주신 것……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회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혹시…… 의견 한번 들어 볼게요,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지역 이사들은 선거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문이사 중에서, 그러니까 1명 이상이 되겠지요. 1명 이상을 전문이사 중에서는 의무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을 여성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 이사를 뽑는데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성 이사 선임이 안 됐다면 여성 투표를 만드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중에 몇 명은 여성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지 지금 되는 거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건, 3번 안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일리가 있으셔 가지고 보류하고 다음으로……

오찬은 한 10분까지 한번 해 보고 오찬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2페이지입니다.

금고감독위원회 제도 개편 관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금고감독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회 호선에서

총회 선출로 변경하며 위원장 직무에 기존 지도이사가 수행하던 금고 경영지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고감독위원장·위원 임원 격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고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는 감사위원장·위원 총 5명을 이사가 겸임하도록 하면서 임원 수도 5명 감소하는 것과 연계된 것인데 중앙회·행안부 입장에 따라서 해당 개정 내용이 미반영되면 임원 총수가 5명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고감독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입니다.

현재도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들 중 위원장이 선출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에서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의 대표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감독위원장 직무에 금고 경영지도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지도이사의 금고 사업지도·경영지도 중 경영지도만 금고감독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으로서 금고 지도업무 이원화 우려가 있고요. 사전적 지도보다 사후 관리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금고감독위원장의 직무와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는 전무이사·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는 것과 연계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 내용이 미반영되는 경우에는 함께 미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금고감독위원장 임원 격상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입니다. 그리고 금고감독위원장 선출 방식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입니다.

세 번째, 금고감독위원장 직무에 금고 경영지도 추가는 앞서 논의를 보류하셨던 경영 대표이사 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인데요. 그것이 정리되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의견 없는 걸로 넘어가고 세 번째 부분은 앞서 보류로 했던 경영대표이사제와 연동해서 처리하는 걸로, 사실상 처리인데 형식적으로는 보류가 되겠습니다, 이 견도.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8페이지입니다.

자산 규모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의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사장·이사와 함께 이를 견제하는 감사의 상근도 의무화하게 되면 금고 경영의 전문성·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농협·신협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1페이지, 금고 이사장의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근이사는 금고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상 주요 업무를 전담시키는 직위로서 명예직인 다른 임원과 달리 급여를 지급받고 농협은 지역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5페이지입니다.

금고 이사장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2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퇴임 후 다른 임원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정인의 권한 독점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과 이사장의 조직 이해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중앙회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호금융 최초로 금고 이사장에 대한 연임 회피·제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전체적인 제도 시행 경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면……

○정춘생 위원 오후에 더 심사……

○이달희 위원 계속 심사……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이건 보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9페이지부터는 네 번째 파트, 건전성 강화 및 회계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금고·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금고·중앙회 비회원도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사업이 이용 가능한데 최근 비회원 대출인 부동산 PF 대출을 과다하게 실행한 일부 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비회원 대출 제한 근거가 없어 중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권역 외 대출만 3분의 1 이하로 제한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회원 대출로 인한 금고 경영위기가 재발할 경우 직접적인 대응수단이 필요하고 농협·수협·신협도 동일한 대출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고와 달리 중앙회는 그 회원인 개별금고의 대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 상당부분을 비회원 대출로 운용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에 농협·수협·신협도 중앙회에 대해서는 비회원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의견은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금고다 보니까 지역 외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농협이나 그 밖의 직능단체에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원 단위의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대로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상당히 강한 규제가 새마을금고 쪽에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거의 한 1조 2000억 가까운 적자가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조승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성권 위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3페이지입니다.

금고·중앙회 적립 의무 강화 등 회계규정 정비 부분입니다.

먼저 금고·중앙회의 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적립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에서 다 강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부채’로 개정하고 세 번째, 배당금 산정 기준을 출자좌수에서 출자액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배당 상한도 정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적립금 적립 강화와 관련해서 적립금은 금고 경영위기 발생 시 활용되는 재원으로서 적립률의 상향조정은 시장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기자본 정의 개정은 현행법상 자기자본 정의가 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규정되면서 회계관행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해당 정의에서 누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요.

배당금 산정 기준 변경의 경우에는 배당을 출자좌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출자금이 출자 단위 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원 권리보호상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당 상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아서 적립금 등 유동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배당금의 상한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먼저 적립금 의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93페이지 표를 잠깐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적립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적립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이 현행에 잉여금의 15%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요. 개정안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새마을금고가 해산할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금고, 농협이나 수협 등의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행도 한 15% 이상 의무적립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특별적립금은 손해가 났을 때 대손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때 쓰는 적립금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 소비자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잉여금의 20% 이상 의무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울러 임의적립금에 대해서도 정관으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94페이지에 있는 자기자본 정의 규정, 세 번째 배당금 산정 기준 변경, 아울러 네 번째 배당 상한 규정 등에 관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가지신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정부 의견 수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점심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을 심사하기 전에 오전에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잠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담금 관련해서 정부의 의견이 명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봄아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동 조항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아쉬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재력을 꽂피울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의 제정·탄생·성장과 같이 해 온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단순히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베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조문도 아닙니다. 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정춘생 위원** 같은 생각…… 동의합니다.

○**한병도 위원**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차관님, 혹시 이 법안이 존치되면 과감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있나요? 아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수석전문위원 말씀 중에 어쨌든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응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조항이 별도 있기 때문에요, 그 조항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조세 외로 국민들한테 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정비를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있어서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좀 알아보고 보류해서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안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 수요일 회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나 전체회의에 바로 올리지 않고 수요일 회의든 그다음 회의든 저희가 논의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면 새마을금고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98페이지 연번 17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연번 17번, 금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의무화 관련입니다.

현행 50% 이상에서 개정안은 100%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별 금고의 상환준비금 보유 의무를 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이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인 것을 100%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준비금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다는 중앙회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80%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나오셨지요?

잠깐 일어나시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뒤에 계신데요. 마이크 주시고……

○**위성곤 위원** 이게 지금 당장 준비금을 이렇게 100%로 늘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오늘 이번 법령 안에서 100%까지 가는데 큰 그림으로

50%·70%·80%·100% 이런 로드맵을 가져 가지고 장기에 걸쳐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그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위성곤 위원 그것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데요……

○위성곤 위원 부담이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위성곤 위원 저는 단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5년이든 7년이든 로드맵을 만들어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승환 위원 지금도 부칙에 2년 동안은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해서 2년 동안 8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것 50%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 신협도 80% 이상인데 갑자기 100%로 하는 배경이 뭡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 이것은 이성권 의원님 법안 발의한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양부남 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금고에 사고가 자주 나서 지금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것 배경을 좀 알 필요성이……

○조승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각 단위 조합 밑에 있는 지역 새마을금고들의 준비금을 다 중앙회에 예치해라 이런 뜻이지요? 너네 자체적으로 이것 가지고서 혹시……

○이달희 위원 불법 대출이나 이런 것……

○조승환 위원 할까 봐 중앙회에서 다 관리해라 이건데 저도 이것은 100% 한꺼번에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부남 위원 무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00% 하는 것은.

○조승환 위원 예, 저도……

○양부남 위원 이것은 제 생각도 일단은 80%를 유지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저……

○소위원장 윤건영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저도 좀 단계적으로 한…… 왜냐하면 지역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칙 조항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80%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양부남 위원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이것 2년 동안으로 되어 있어서……

○이달희 위원 아니, 2년이잖아요. 그냥 80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냥 80으로?

○이달희 위원 예, 80 이상으로 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본칙에 80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을 본칙으로 넣자……

○정춘생 위원 위성곤 위원님은 100%로 하되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것 아닙니까?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저는 왜냐하면 농협이나 수협 등은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새마을금고에 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하고 있는데, 100%까지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용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니까 한 5년 정도 유예해서 이렇게 끊어서 단계를 만들어 주면 운영하는 데 준비도 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급하게는 가지 말자는 취지이신 것 같고 지금 개정안은 100으로 가되 2년 동안은 80 그다음에 100인데 위성곤 위원님 안은 이것을 한 5년 정도로 정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예 80으로 본칙에 가자라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5년에 100으로 하면 대충 80 이야기하신 위원님들도 동의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2년……

○박정현 위원 5년 정도……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80을 2년~3년 동안 또 한 5년간 하는 거지요.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잡고 2년 동안은 80 그다음 3년은, 이렇게 맞춰 가자라는 것이지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100으로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이달희 위원 왜냐하면 단위 금고에서도 자기들 자체 대출이나 지역의 소규모 대출이나 이런 권한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위성곤 위원 대출은 다 하는데 이제 준비금을……

○이달희 위원 준비금도 마찬가지지요.

○위성곤 위원 준비금을 어디 넣느냐는데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지금 행안부가 금고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

○이달희 위원 80으로 하고……

○**조승환 위원**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99페이지 웓 상단 보시면 표에……

○**조승환 위원** 98페이지.

○**위성곤 위원** 예, 98페이지 보시면 ‘특정 직능인 대상’ 해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방향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당장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 이것을 단계를 좀 끊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5년을 잡고.

○**조승환 위원** 2년을 70%로 하고 3년을 80으로 하고 5년을 100으로 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5년 후에는 100으로 맞추되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2년 동안은 한 70, 2년부터 나머지 3년 동안은 80 정도로 맞추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동의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도 위원님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중앙회랑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위성곤 위원** 다음에 올 때 안을 좀 만들어서……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요. 그사이에 고민을 해서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칙 개정사항만 보시면 되겠네. 목표는 100으로 가는 걸로 하고 부칙 개정사항……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0페이지에 예금자보호준비금 한국은행·금융기관 차입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모두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 차입금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상반기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이를 대부업자로 등록된 손자회사 MCI대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MCI 대부는 대부업 법률에 따라 24년 6월 기준 총자산을 자기 자산의 10배인 2조

9240억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서 상반기 13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소화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한된 예산으로 저축은행·가계대출 등 다른 금융 분야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조속히 분리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이고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2002년부터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100%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입 부실채권의 회수·관리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의 손실로 이어져 설립 효과가 반감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경영 위기를 계기로 설립되는 만큼 조직의 효율적 운영도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자산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일단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매입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은 새마을금고의 재무제표를 현실화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자산공사에 넘기니까.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이 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입한 채권을 회수 못 하면 새마을금고의 재무제표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결국 그것이 오른쪽에서 손해 보고 왼쪽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자산관리회사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거기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그것을 실행을 못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재무제표를 현실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산관리회사를 새마을금고나 중앙회에서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중앙회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내고 다른 데서 지분을 내서 만든다면 몰라도 순수한 새마을금고의 돈으로 한다면 이게 경제적 효과는 똑같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을 차관님이 해 주시든 국장님이 해 주시든 아니면 정확하게 하시려면 뒤에 중앙회에서 하시든. 누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예를 들어서 금고 대출금이 100원인데 그것을 100원에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산을 평가

해서 예를 들면 80원에 평가가 됐다라고 그러면 80원에 사는 겁니다. 사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부실이 금고에 전이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자산관리회사가 100원짜리 채권을 80원에 샀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그 자산관리회사가 80원에 산 것만큼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 자산관리회사조차도 회수를 못 해 버린다 그러면 결국 자산관리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지금 하는……

○**양부남 위원** 그런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출자가 전부 새마을금고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아니, 지금은 80원에 사는데 그것을 사후정산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원에 팔았다, 70원밖에 회수 못 했다 그러면 금고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또 내놔야 되는 거고요. 사후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원에 사 가지고 90원에 팔았으면 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이것……

○**소위원장 윤건영** 예,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실이 난 것은 지금 지역 금고인 거지요?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조승환 위원** 지금 중앙회에는 아마 돈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부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회에서 안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실을 안아서 채권을 해서 지역 금고의 부실을 털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수협에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편법인데…… 중앙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효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승환 위원**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자산관리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도 돈을 넣어서 자산관리회사를 만드니까 이게 결국 눈가림 아니냐 이거지.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무님께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의 한 1200여 개의 단위 금고가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들을 처분을 못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충당금도 많이 쌓였……

○**소위원장 윤건영**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자회사를 중앙회 내에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자회사를 중앙회가 출자를 해서…… 지금 출자

가능성은 금고나 중앙회 다 해 놨는데 실질적인 출자는 아마 중앙회가 할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양부남 위원님이 이제 궁금해하신 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아니냐……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회하고 지역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부실채권을 일반적으로…… 지금은 개인에게 터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지금은 대부회사나 이런 데다가 팔고 있거든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부실한 자산이 만들어지면 그 부실한 계약 건을 지금은 MCI 대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대부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마다 주는 거랑 두 번째, 자산관리공사에 주는데, ‘자산관리회사를 만들면 쉽게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요새 새마을중앙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경영성과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실은 자산관리회사를 만들면 이게 조직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이 확대가 맞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그런 지적이 일부 있고요.

수협이 자산관리공사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수협이 지난…… 얼마 안 됐지요, 법안 통과가 된 게?

○**조승환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수협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못 했다가 이번에 했는데 금고가 당장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효율적이긴 하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것 보류했다가 저희들도 더 공부도 해 보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세요, 전무님?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지금 저희가 MCI대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금고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조 원어치 채권을 매입하는데 MCI 대부 자본금이 50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고 채권을 매입할 때 10%…… 내년 서부터는 25%인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어치 부실채권을 사려 그러면 2500억 원을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올해에는 MCI대부에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출자를 해 갖고 하는데 그 출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산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업법 규정을 안 받아서 농협 같은 경우가 자본금 한 200억 정도 가지고 한 3~4조 원어치를 사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위원장 윤건영** 어쨌든 이것도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독권 강화 및 회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중앙회장의 개별 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등 신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취지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구의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9페이지, 회원의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금고의 출자자인 회원에 대해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협·수협도 이미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회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2페이지, 행정부장관의 금고·중앙회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관한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의 표를 보시면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안부장관이 다음 조치를 직접 실시 또는 조치 요구, 두 가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은 현행 조치 요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치 요구 외에 직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피감독기관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 감독기관에 직접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은 주무부처가 직원은 물론이고 임원에 대해서도 조합·중앙회에 제재처분 요구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재부장관·주무기관장이 직원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영지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임원 중에 비상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위성곤 위원 직원은 어디까지를 직원이라고 하나요? 직원의 범주.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 그대로 임원이 아닌 사람이 다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 위성곤 위원 금고중앙회에서 나오신……

직원이라고 하면 상무까지인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지금 전무까지인데 이사회 구성 멤버는 아닙니다. 전무, 상무가 있는데……

○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전무까지가 직원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렇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리고 임원은 이사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위성곤 위원 아니, 직원까지 장관이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이건 좀 뭔가 지금 사회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이달희 위원 행안부의 어느 부서에서 직원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시뮬레이션이 됩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 직원이 진짜 잘못할 때 형사고발이나 이런 게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금융에 관련된 거니까.

○ 위성곤 위원 혹시 현행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 이달희 위원 어떤 사례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런 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달희 위원 예.

○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님이 안 계시거나 이사장님이 계시더라도 실권을 전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그런 경우에는 담당 전무를 징계하고 싶어도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더라도 처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해산된 북악금고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에 대한 처분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처분을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병합이라든지 통합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임원에 대한 직접 처분이 있었지만, 처분권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 안 합니다. 이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이게 주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실제로 옮길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단위 금고의 전무가 임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임원이 아닌 경우,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직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법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다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직위는 이사회에 안 들어가니까 내부 직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임원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방식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형사고발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여기 물론 장관이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해서 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원의 비위가 설정법 위반이 되면 당연히 고소 고발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법은 여기에 직원까지 넓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전무는 임원은 아닌데 임원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고소 고발하지만 형사적 비행이 아닌 전권 행사했을 때 이것을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 입장은?

저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전무나 상무 이런 사람들이 전권을 행사하고 어떤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이 거기에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비행을 하는 전무나 상무를 이사장이나 이사가 감싸고 도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제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도 상정한다면 꼭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승환 위원** 제 의견은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토클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상정하는 그런 데 대해서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아이디어 받기 전에, 이게 민간 기구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민간의 자율성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해서 정부가 끼어들면 그러면 농협과 수협·신협 이런 데도 다 끼어들어야지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은행 이런 데도 다 끼어들어야 되고.

결국 민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정화되고 규정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권한을 지금 과도하게 행안부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오히려 그럴 거면, 이렇게 감독을 잘 못할 거면……

감독을 잘 못한다고 욕먹으니까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금감원에 넘겨줘야

지요. 금감원이 관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행안부가 이걸 관리하면서 잘 못하니까 행안부장관이 직원 징계권까지 실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임원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다만 양부남 위원님처럼 직원인 경우에 아주 악성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를 들면 일단 현행대로 하되 그 조항 하나만 넣어서 대통령령으로 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이달희 위원** 실제적인 금융권을 가진……

○**소위원장 윤건영** 아까 차관이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왜곡된 사례들,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나?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 왜곡된 사례들을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그 정도 제한을 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반영해서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

○**이달희 위원**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의하기 어렵지만, 사실 자율권에 속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일단 이것은 그 정도로……

○**이달희 위원** 예, 오케이.

○**조승환 위원** 빈대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초가삼간 태우는 거지.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이 찝찝해 하시니까 보류로 하고요. 어차피 다시 리뷰합니다.

○**위성곤 위원** 안을 좀 만들어 오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리뷰할 때 아까 그 안을,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한 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금고 외부감사 의무화 조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 실시, 개정안도 동일

합니다. 금고에 있어서는 현행은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 등 행안부장관의 명령 시 외부감사가 실시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이미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30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금고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실시 중이고 농협·수협은 외부감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행안부장관의 외부감사 명령권을 삭제하고 있는데 외부감사 비의무 금고에 대해서는 명령권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2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정의견으로 기존 외부감사 명령권도 비의무 금고에 대해 필요할 수 있도록 존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매년 외부감사를 하게 됩니까, 금고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일정 규모 이상은 하게 됩니다, 3000억 이상.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농협이나 수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고중앙회에서 오신 분.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 적혀 있습니다. 농협·수협 다 하고 있는.....

○**위성곤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이달희 위원** 수협은 2년, 농협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위성곤 위원** 농협은 자산 500억 이상인 경우 조합장 임기 중에 1회, 수협은 2년.

○**조승환 위원** 지금 300억하고 3000억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3000억 미만 500억 이상은 2년마다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건 3000억 이상이고요. 이게 아마 조합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양부남 위원** 3000억 이상이면 매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큰 규모니까.

○**위성곤 위원** 금고중앙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행안부하고 저희 의견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고는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저희랑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0페이지, 24번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규정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대상과 또 조치 유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고·임직원 등에 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위법 또는 효력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금융기관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도 각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려해 주실 것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재 유사 감독권한인 경영지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 개정안이 지금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만 경영지도인 경우에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보다 적기시정조치가 상당히 높은 근거인데 거기에 맞춰서 벌금조항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2페이지입니다.

기타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5번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년 기준 금고 회원 수가 평균 6648명이나 주소·거소가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 있어 통지 누락이 발생 중이고 전자적 수단 등을 활용하는 경우 자원 및 사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관련 서류의 송달 등도 전자적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위성곤 위원 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적 통지라는 게 문자나 이런 것들로 보낼 텐데 저희들도 문자를 자주 보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자동으로 수신 거부를 찍어 놓으면 요새는 '02'로 보내는 전화번호는, 저희 동네는 안 받고요, 문자를 보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보완적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요, 사실은 그 조치를, 어떻게 확인할 계획입니까, 우리 부처에서는? 그러니까 보내는 것은 좋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것은 제가 고민을 조금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실무적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을 내놓고 실무적으로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 안 해 봤는데요. 사실 이것은 동의 기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은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내서 그분들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신 거부를 해 놓을 가능성성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동의해도, 저희들 다 동의하지만 수신 거부해 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금고·중앙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법안 논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이게 정보통신망으로 이용하면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랑 병행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편물……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기존에는 해당 주소지로 발송했었던 거고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안대로 하면, 개정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근거 조항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의무 조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병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그런 우려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위성곤 위원** 아니, 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여서 사실은 거소 우편 발송을 안 하고 전자 수단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계획이겠지요, 말은 안 하지만.

○**이달희 위원** 그런데 외부로 보내 보면 그게 미확인은 뜨기 때문에 병행하면 미확인된 것은 2차로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병행해서 하면 거의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 고민해 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주소·거소도 불분명해서 반송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완적 조치로 전자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거소도……

○**정춘생 위원** 보완적 조치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양부남 위원** 금고 회원 수가 6648명, 이것 현재 우송을 하면 우편료가 얼마나 듭니까, 한 번 보낼 때? 경제성도 따져 봐야지, 우리가.

6000명 잡고 한 번, 1회 통지하는 데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금고의 회원이 될 때 등록된 주소가 만일 바뀌어도 주소 보정과 같은 신고 없지요? 그러면 다시 반송료가 또 들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경제적 효과의

면에 있어서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경제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수신 거부를 했거나 거절이 됐을 때 거기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 제도가 통지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외되지 않고 연락받을 사람이 빠지지 않는 어떤 기술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 같은 것 보내면 안 본 사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도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이 절약되는지.

○**위성곤 위원** 보류해서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26번,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참여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새마일금고 공제사업 시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제는 회원 간에 일정액을 약출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성격이 유사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 보험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0페이지 27번,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근거 명확화입니다.

복지기구 설치 근거 규정에 기구 명칭 및 공제사업 준비금 적립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제사업 등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행법에 새마을금고복지회 명칭 및 준비금 적립 등을 명시해서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는 공제회 입법례가 없으나 일부 직능 단체 공제회의 경우 법률에

기관 명칭 등을 명시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법 관련해서 마무리를 한번, 1차 리뷰를 했고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류 안건을 정리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3쪽입니다.

4건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입니다. 4건 중의 김문수·주철현 의원안은 지난 9월 4일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혜인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진상규명 조사기한 등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은 동법상 진상규명 신고기간 그다음에 자료 수집·분석 기한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한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고기한은 현행 1년에서 김문수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은 4년으로 연장하고 주철현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조사기한은 현행 2년에서 모든 개정안이 다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작성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또는 주철현 의원안은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첫째,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서—중간 부분입니다—신고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한 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피해 인원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한 사건 규모 대비 신고 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은 신고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8차에 걸쳐 연장한 바 있습니다.

둘째, 조사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은 모두 조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기간이 도과되었고 여전히 미처리 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는 현실을 볼 때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와 같

이 추가 연장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보고서 작성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각각 연장하고 있는데요. 6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 현행 규정은 유사 과거사 사건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철현 의원안과 같이 6개월 추가 연장해서 보고서 작성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신고가 이루어졌고 또 신고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조사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과거사정리법이나 부마항쟁법 등을 참고로 해서 1년을 연장하고 또 진행 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1+1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연장기한 관련해서는 앞서 조사기한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보고서 작성기한도 연장이 되는 관계로 이것은 현행 6개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고기한, 조사기한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한, 이 세 가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조승환 위원** 신고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의 이야기 들어 보면 신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지난번 접수했을 때 진상규명으로 왔었던 게 191건이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7000건이 그 당시에 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구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신고기한은 지금 정부 의견으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없고 당장 급한 것은 조사기한 연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가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신고기한 이렇게 연장하는 게 사례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끝나고 신고받고 신고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끝나고 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다시 조사를 받는 게, 신고를 받는 게 합리적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주 4·3의 경우에는 연장된 바는 있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줘 보시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한 번 정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히 신고 수요는 작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고기간을 이렇게 주자고 하는 것을 보면 신고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신고받은 것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를 받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신고를 더 받는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어쨌든 조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전화받아 보고 이러면 신고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 이런 전화를 저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정부에서 이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기한부터 연장을 하고 다시 신고를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고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기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사실 위원회도 정부 돈이 여기, 죄송합니다, 돈 이야기해서. 이 운영 경비로 얼마 들어가지요, 예산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예.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기획총괄과장 최경민 여순사건 위원회 기획팀장 최경민……

○소위원장 윤건영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기획총괄과장 최경민 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최경민입니다.

저희 1년 예산안은 2024년의 경우 53억 원이었고 2025년의 경우 48억 원……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사기한을 저는 이렇게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주면 뭐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펌훼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좀 루스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기한 부분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부분 보고서 작성 기간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필요해서 조사 기한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신고기한은 이번 조사는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다시 신고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조사기한은 1년을 일단 하고 지금부터 1년으로 해서 1년 날짜를 정해서 하고 추가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조 위원님은 기한을 1+1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6개월, 이렇게……

○조승환 위원 6+6, 필요하다면.

○소위원장 윤건영 6+6, 예.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보면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여수·순천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

거든요. 저는 특히 이 과거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문제는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하자면 저희 엄마로부터 외삼촌이 4·3 피해자라는 것을 들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과거사……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현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피해자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입장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하고 피해자 유족들을 대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는 인식이 깔려 있다, 피해자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4·3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안 드리났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1년 하고 조사만 조금만 연장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신고도 그렇고 조사기간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예산이나 효율성 이렇게 보지 마시고 피해자들, 유족의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피해자 추정 규모가 2만 5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고는 7465건……

○**위성곤 위원** 7400명 정도 된 거지요?

그러면 여전히 정보를 도달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 한 사람이 많은 걸로, 그래서 전체 한 3분의 2가 실제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추정치가 뭐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주 4·3에 비춰 보면 충분히 더 신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실무위 구성 후에 1년 정도의 신고기간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사기한은 지금 미처리 건수가 5300건인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또 조사기한을, 신고기간을 1년 정도 연장시키면 거기에 최소 한 2~3000명은 더 들어올 거라고 보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최소의 기간, 그러니까 뭐 저는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지켜보고 다시 재차 조사기한 연장에 대한 법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기한은 사실은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나서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6개월은, 인원을 더 많이 준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해 봅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얘기인데 지난달 얘기입니다, 멀리도 아니고. 그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분, 친척이지요. 친인척인 상주분한테 돌아가신 망자인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때 잡혀가셨다가 풀려나신 분이야’라는 얘기를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으면 그 일 무슨 문제겠냐 싶어서 다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게 정말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트라우마였던 것이고 이건 뭐 정권의 좌우를 따질 문제도 아니고 국가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한다라는 인식을 장기간 심어 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서 신고하는 기간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국민들 일반이 말이지요, 전체 국민들이 ‘아, 내가 정말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책임감 있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점까지 고려해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 봅니다.

○**양부남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기본적으로 신고기간, 조사기간, 보고서 작성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이 빨의한 법을 보면 신고기한을 1년부터 4년 까지가, 연장된 기간이 조사기간은 2년부터 5년, 보고서 작성기간이 6개월부터 2년까지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기간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합리적 데이터도 없고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해서 또한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 봤어요, 방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고 건이 2만 5000건인데, 현재까지 예상치가 2만 5000건인데 7465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 신고하는 데까지 총 소요된 기간이 얼마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1년 신고받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1년 신고받았다? 1년에 7000이면 앞으로 2만 5000이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죄송합니다, 위원님. 2년입니다.

○**양부남 위원** 2년에 7000건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1만 3000이지요?

4년이 필요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4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사는 미처리가 5390건입니다. 이 조사 몇 년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2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부남 위원** 2000건을 처리했어요. 2000건 처리하는 데 2년 걸렸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만 5000건처럼 뭐…… 10년도 더 걸려요, 13년. 그리고 보고서 작성기한, 보고서는 아직 작성 안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세 분의 의원님들이 제시한 기간은 매우 미니멈 같아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이 의원님들이 제시한 기간에 최장기간을 해 줘도 부족할 것 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리적 근거,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의견 발언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하시고 해서 다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주 산술적인 합리성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고하라 하면 제일 먼저 왕창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님처럼 ‘어, 그래’ 해서 뜬문뜨문뜨문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쭉 이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제3사건처럼 대통령령에 정해서 우리 조사기간에 또 옆집에서 이런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느냐 나도 가서 신고하자’ 이렇게 해서 쭉 연장을 자연스럽게 해 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사기한 연장은 또 국회가 앞으로 문을 닫을 게 아니니까 기존에 다른 위원회 했던 것처럼 1년 하고 또 1년 더 해 보고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도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보상하고 빨리 조사하고 혜택을 빨리 드리는 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유족들한테 다른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또 그게 운용의 묘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6개월 보고서 작성은 현장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아주 행정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주면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으로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특별법이 73년 만에 저희 21대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3년이 되었지만 이게 성과물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들이 극우 논란, 전문성 결여, 실무 인력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조사 업무를 아직 시작도 못 한 이런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진상규명 조사기한 1년 연장을 하는 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21대 통과됐을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조사가 막 진행이 되고 성과가 났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관의 여러 이유로, 이렇게 본격적인 사업도 안 된 상태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한 3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정도로 의견을 확인하고요. 기록을 아마 행정실에서도 했을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 잠깐만 하나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게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처리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 현황보고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주4·3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요. 그 연장되어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몇 건씩 매해 증가됐는지 신고 건수와 조사 건수를 함께해서 그 자료를 우선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담당 국장이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조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고기한 연장은, 신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고기한 연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순과 관련해서 경험을 했거나 목격을 했거나 문헌에 이런 게 있다라고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난번 신고 기간을 통해서 총 접수된 게 191건입니다. 이 기간을 지금 최대 4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있는 것이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실질적인 유족과 희생자 신고는 제주4·3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그 신고기한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신고를 받은 게 7400여 건이고요. 그게 두 번에 나누어서 신고를 받았는데 1차 때 한 6800여 명이 신고를 했고 2차 때는 그것의 10%인 670명 정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고가 됐구나 해서 실질적인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신고는 앞으로 이 신고된 건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수요가 있다 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신고 기한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제주 4·3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한은 1+1 해서 2년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는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대부분 다 5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1+1이면 2년을 하기 때문에 4년이 조사기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시점에 가서 추가 수요가 있다면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작성기한은 과거사 모든 입법례가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고서 작성기한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없어서 저희 정부에서는 보고서 작성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문상** 9쪽입니다.

9쪽에 두 번째 개정사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규정 변경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6인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첫째, 위원회 위원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위원회 인적 구성에 차이가 없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원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 내용을 입법화한다면 현행 성별 고려하는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의 준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둘째,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추가와 관련해서 용혜인 의원안에 있는 안인데요. 제주4·3사건위원회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6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다각적 관점에서 진상 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제주4·3사건위원회의 위원 총 25인 중 4인에 대해서만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여순사건법은 위원 15인 중 6인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개정안은 현 위원 정수를 유지한 채 국회 추천 위원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원의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원 구성 변동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입법화한다면 위원 구성 변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따라 부칙에서 현 위원의 임기보장 관련 경과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정의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아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회 추천한 입법례 그리고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 부마 사건, 5·18 보상법 같은 건 국회 추천이 없는 입법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종합 고려하셔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국회 추천 6명은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현재 계신 위원들의 임기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현행은 9인인가요? 지금 현행 위원회 위원 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행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6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5명?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전문위원 조문상**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하시고 김성희 위원님 하시지요.

○**양부남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게 위원회의 어떤 편향성을 지적한 것 같아요, 유족들이. 위원회 성격의 편향성을 짚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숫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나 국회 추천 인원을 넣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질문인데, 지금 당연직 여섯 명은 사실상 정부에서 다 구성하고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 정도가 정부의 컨트롤 밖에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나서 위촉직 아홉 명을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 국회가 몇 명 추천하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섯 명을 죄다 야당이 추천할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절반, 절반 한다고 해도 실제로 야당이 추천하는 뜻은 굉장히 적어서 나머지는 다…… 야당 추천이 또 무슨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섯 명이 많다고 보시는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섯 명이 많다는 건 지금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김성희 위원** 열다섯 명 중에 여섯 명이라고 하셔야지. 당연히 여섯 명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리 과거사 관련 전체적인 법을 봤을 때 보통 세 명에서 네 분 정도를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 세 분 정도 하시게 되면 국회의장님, 야당, 여당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섯 명을 정부에서 추천하고 다섯 명의 당연직 정부 위원이 들어가고 한 명의 지사가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민주당이 주장을 세게 할 주제가 아니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국회에서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담긴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여섯 명 임명하고 국회가 세 명 임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섯 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부 측이 과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전문위원 조문상** 13페이지에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임기.

○**소위원장 윤건영** 26년이 대부분이네요.

○**조승환 위원** 25년에 두 분 계시네요, 25년 5월 31일.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입법적으로 임기를 차기에 임명되어지는 사람부터 국회 추천 뜻을 넣으면 임기조항은 문제가 없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경과조치가 있으면 될 거고.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네 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과거 여러 유사 법안들 보면 세 명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 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6인이면 좋겠습니다마는 4인 정도도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에 보니까 4인들이 많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합의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다 쭉 리뷰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16쪽입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은 위원회 등 구성 시 고려사항이 추가되고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 외에 균형 있는 역사관을 추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거나 위원회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균형 있는 역사관 추가와 관련해서, 이게 주철현 의원안의 내용인데요. 현행 위원 구성 시 고려사항에 정치적 중립 외에 균형 있는 역사관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진실규명활동의 객관성·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선언적인 문구로 보임에도 균형 있는 역사관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둘째,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객관성 유지 의무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입법례에 따른 위원회는 독립위원회임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순사건위원회 및 제주4·3사건위원회 등을 독립위원회가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도 위원 구성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에서도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먼저 균형 있는 역사관 추가와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 그 판단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의 아마 법적 성격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순사건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고요. 참고로 하셨던 사항들은 독립위원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던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 조항들이 아마 정합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거사 관련 다른 법들도, 4·3이나 노근리나 거창이나 부마항쟁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독립성 조항을 별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4·3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펌훼하는 분들이 이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안 어울리는 일이잖아요. 거꾸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지금 4·3

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이 문구 자체가 무슨 기준이냐고 하시겠지만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랬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시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이 폭도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다’ 이런 유의 발언을 했던, 이런 정도로 좀 균형이 전혀 없는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는 정치적 근거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저는 나쁜 일인가라는 점은 좀 짚어 두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이번에 균형 있는 역사관 추가에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가 ‘알면서’라는 용어를 넣어서 굉장히 언론의 질타를 받고 법사위에서 빼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다, 국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해서 우리 사회의 자정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취지에, 그 정도 우리 사회는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추천하는 위원들도 이 문구가 안 들어가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수행해 낼 위원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믿고 이런 약간 해프닝적인 자구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야 간의 입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것도 보류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29쪽입니다.

네 번째 개정 사항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부여 관련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위원회활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첫째, 위원회 활동 보고서 매년 1회 국회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신고 처리 경과를 점검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법률 중 진실화해법을 제외하고 개별 과거사 관련 법에 유사 입법례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관련해서는 사후 통제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노근리사건법도 유사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보고서 매년 보고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신다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과거사정리법에만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그 개정안에 공감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큰 이견 없으면 합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리뷰를 하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 전문위원 조문상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사항은 특별재심 청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주철현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재심 절차보다 용이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희생자의 조속한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법에도 특별재심 관련 동일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법무부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진상조사 결과를 마무리 한 후에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재심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희생자 결정 이후에 하셔도 되실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취지 자체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만 시기를 확정된 다음에 하자 이런 취지 이신 거지요?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조승환 위원 대체로 결정되고 절차를 밟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넘어가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문상 36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정사항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주철현 의원안의 내용이고요.

현행법이 희생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시면 하단 박스에 10월 현재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서 총 8309명이 결정되었고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아직은 개시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도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관련 법률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다만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신다면 일부 문구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정이 희생자와 유족 동시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혼용돼서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거사 관련 법에 현재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 주고 있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급을 하더라도 희생자, 유족이 결정된 후에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전반적인 다른 과거사와의 공감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이것은 피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가 확정되고 피해 규모나 이런 게 정리되고 난 뒤에 논의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유족의 범위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이 국민 정서하고 맞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어차피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위성곤 위원** 향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유족회에서도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거사법이 이제까지는 진실 규명이 있었다면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계기를 어디선가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순법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토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것도 쟁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확인 차원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44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정사항은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신설 관련입니다. 권향엽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홍보 및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를 통해 유족 등을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령사업과 홍보사업을 같은 조에 규정하여 위령 및 홍보사업으로 명명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별도 조문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시행일입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내용은 진상규명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적으로 이런 조항을 다른 과거사법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시행일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3개월 경과?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조항이 들어간다면 시행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순법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저희 법안소위도 그렇고 행안위도 그렇고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그 예비적 조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나왔던 쟁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실하고 따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쟁점만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논의를 할 텐데 어쨌든 그전에 제가 여야 간사님하고 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의견을 좁혀 보고 그걸 가지고 수요일 날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수요일 날은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법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법이다 보니까 여순법은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처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순법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희생자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족의 형태가 사실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고 실제 제사를 양자 들어온 사람이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분들을 챙어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이제 유족들도 많이 고령이 돼서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꼭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의견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류 안건을 정리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1소위 법안소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소위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곧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성권 정춘생 조승환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황길현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최경민